

##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1. 31. ~ 2. 5.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5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34호
----------	--------

○ 발의연월일 : 2020. 1. 31.

○ 발 의 자 : 나안수 의원, 김병권 의원

## 1. 제정이유

- 순천시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 관리하고, 도시역사문화를 조사, 수집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전담인력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조사대상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 기록물의 생산, 실물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 도시역사문화 등의 보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문화역사 보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안 제24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 관리하고, 도시역사문화를 조사, 수집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라 함은 시정과 관련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류(도서, 사진류, 금석, 금석문류, 서화류 및 녹음, 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시정실록”이라 함은 시와 관련된 시정전반에 관한 사건, 사고, 행사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4.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 취득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캔, 촬영,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도시역사문화”란 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미래 자산을 말한다.
7. “아카이브”란 시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8.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주민으로서 지역 생활 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전담부서”란 시 시정자료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물자료”란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물자료 소장자의 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는 등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외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협조

5. 그 밖에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활동가 위촉)**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및 대상지역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무형의 미래유산
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사고
5. 보존가치가 있는 각종재해, 재난
6. 그 밖에 기관·단체·민간에서 추진한 축제 및 각종 행사 홍보물·간행물·용역결과물, 기념품·생활민구 등 시장이 사료 및 도시역사문화로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구술채록,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실·과·소·읍면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전담 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③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9조(실물자료 등의 수집)** ① 시장은 시의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라 민간인(기관단체 포함)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사본수집하거나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 소장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박물관(자료관)에 소장품으로써 기증할 수 있다. 다만,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물자료를 공고하거나 추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물자료를 구입하는데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물자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받아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실물자료는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문화역사 보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실물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구입대상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역사문화 등의 보존)**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보관장소 및 운영주체)** ① 시장은 시정실록 및 아카이브 기록물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문화역사 아카이브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고, 제10조제2항의 사항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제12조(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대여)** ① 공공·교육·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여비는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변상)** ① 대여 받는 자가 대여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대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자료가 있을시 그 자료로 변상하고, 변상이 불가한 경우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출은 감정 전문기관 의뢰 또는 실물자료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제반 경비 발생시 대여 받은 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15조(활용)** 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본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문화역사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민단체, 학계, 문화, 건축, 박물관, 환경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2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 31.

## 1.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가속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무원 복무 제도 개선
- 출산장려 및 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친화 문화 확산

## 2. 주요내용

- 제23조(특별휴가) 제18항 신설
  - (출산장려휴가)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 6. 예산상황 : 불임(비용추계서)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2. 31. ~ 2020. 1.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1. 10.(여성가족과-68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 7.(기획예산실-22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 20.(순천시 공고 제2019-2371호)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⑱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⑰ (생략)  <u>&lt; 신 설 &gt;</u>	제23조(특별휴가) ① ~ ⑰ (현행 과 같음)  ⑱ <u>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은 출산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 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u>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8항
  -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단,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한다.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b)	570,771	87,541	105,050	115,555	126,060	136,565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시비	570,771	87,541	105,050	115,555	126,060	136,565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출산휴가 사용 인원 : 연 50명
- 지급급여액 : 2,101천원(8급 3호봉 기준 / 1개월 평균치) \* 본봉 +수당(가족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 산 출 액 : 105,050천원(50명 x 2,101천원)

##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 8. 작성자(참여자)

자치행정국 총무과 과 장 채금목 (☎ 749-5457)  
 총무팀장 한길성 (☎ 749-5616)  
 담당자 김소형 (☎ 749-5618)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2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 31.

## 1. 개정이유

- 순천시의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및 이에 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당초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교류협력, 해외사무소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해외사무소 기능 : 국외 도시 교류협력 지원, 문화예술·관광 교류 등
  - 해외사무소 운영 :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
  - 해외사무소 지원 : 사업비 등 예산 지원, 소속 공무원 파견, 현지인 고용 등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불임(비용추계서)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2. 31. ~ 2020. 1.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 8.(여성가족과-42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 7.(기획예산실-22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 20.(순천시 공고 제2019-2370호)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해외사무소”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를 비롯한 국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5조 본문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순천시의 국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2. 수출상품 전시·홍보, 투자유치 등 통상 지원
3. 문화예술·관광 분야 교류 지원 및 홍보
4. 관광객 유치활동 및 현지 관광 네트워크 구축

5. 해외교포와 협조 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인력 및 재정지원) 시장은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순천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lt; 신 설 &gt;</u></p> <p>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 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p> <p>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p> <p><u>&lt; 신 설 &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교류협력”이란 <u>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u></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u>해외사무소</u>”란 <u>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를 비롯한 국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u></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순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 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lt; 신 설 &gt;</p>	<p><u>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시장</u>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제11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①</u> <u>시장은 순천시의 국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u></li> <li>2. <u>수출상품 전시·홍보, 투자유치 등 통상 지원</u></li> <li>3. <u>문화예술·관광 분야 교류 지원 및 홍보</u></li> <li>4. <u>관광객 유치활동 및 현지 관광 네트워크 구축</u></li> <li>5. <u>해외교포와 협조 체계 구축</u></li> <li>6.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② <u>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u></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 신 설 &gt;</p> <p><u>제11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2조(인력 및 재정지원)</u> 시장은 해외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순천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u>제13조(시행규칙)</u> (현행 제11조와 같음)</p>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12조(신설)
  - 제11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순천시의 국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인력 및 재정지원) 시장은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순천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중국과의 교류 강화 및 중국 기업, 관광객 유치 등 거점 확보를 위한 중국 북경사무소 설치 운영
  - 시기 : 2020. 7월
  - 명칭 : 순천시 중국 북경사무소
  - 인력 : 2명(공무원 1명, 현지고용 1명)
  - 기능 : 국제교류, 통상지원, 문화예술, 관광 등 교류 협력 지원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654,324	90,036	141,072	141,072	141,072	141,072
세입(a)	0	0	0	0	0	0
세출(b)	654,324	90,036	141,072	141,072	141,072	141,072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654,324	90,036	141,072	141,072	141,072	141,072
시 비	654,324	90,036	141,072	141,072	141,072	141,072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산출기초)

○ 소요액 : 90,036,000원

- 설립 등기 수수료 1식 = 5,000,000원 × 1식
- 사무기기 구입 1식 = 10,000,000원 × 1식
-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6월 = 2,500,000원 × 6월
- 숙소 임차료, 공공요금 6월 = 4,280,000원 × 6월
- 국외업무여비 3회 = 1,500,000원 × 3회
- 재외근무수당 6월 = 2,976,000원 × 6월
- 현지고용인 인건비 6월 = 2,000,000원 × 6월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 8. 작성자(참여자)

자치행정국 총무과 과 장 채금목 (☎ 749-5457)

대외협력팀장 남기윤 (☎ 749-5639)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2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 31.

## 1. 개정이유

- 행정리의 법정리 소속 조정, 신도심 지역의 원활한 통·반 관리를 위한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표 1] 주암면 : 내광리(행정리), 원동리(행정리)의 법정리를 대광리에서 광천리로 변경
- [별표 1] 서면 : 반계를 92에서 93으로 정정  
※ [별표 1]의 반총계를 697에서 698로 정정
- [별표 2] 덕연동 : 22동 2반의 관할구역 조정, 70동을 분리해 71동 신설  
※ 기존의 덕연동 71동~79동은 각각 72동~80동으로 조정
- [별표 2] 왕조1동 : 37동 관할구역 조정 및 72동 신설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연간 9,460천원(비용추계서 첨부)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2. 11. ~ 2019. 12. 31.)결과 : 의견제출자 있음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삼산동 3통장 및 4통장 의견 제출  
: 지번 추가 및 조정 시 3통에 원룸이 모여 있어 세대 수의 균형이 맞지 않고 3, 4통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합할 필요가 있어 관할구역 조정 재검토를 요청(2019. 12. 18. / 삼산동-16140호)

- 자치혁신과 검토결과 : 수용(재검토)

☞ 삼산동 3통, 4통은 조정이 시급한 지역이 아니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2. 1.(여성가족과-2453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11. 22.(자치혁신과-16563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29.(기획예산실-157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2. 9.(순천시 공고 제2019-2229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주암면 대광리(법정리)의 ‘내광리(행정리) 제1반 내광’ 과 ‘원동리(행정리) 제1반 원동’ 을 삭제하고, ‘원동리(행정리) 제2반 대광’ 을 ‘제1반 대광’ 으로 하며, 광천리에 ‘내광(행정리) 제1반 내광’ 과 ‘원동(행정리) 제1반 원동’ 을 신설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 주암면	⋮ 광천	⋮ 외광	⋮ 제1반 제2반	⋮ 남편 북편
	⋮ 대광	⋮ 내광 원동	⋮ 제1반 제1반 제1반	⋮ 내광 원동 대광
⋮	⋮	⋮	⋮	⋮

별표 1 중 서면 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 서면	⋮	⋮	⋮	⋮
⋮ 계	⋮ 14	⋮ 63	⋮ 93	⋮
⋮	⋮	⋮	⋮	⋮

별표 1 중 총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 총계	⋮ 163	⋮ 461	⋮ 698	⋮

별표 2 중 덕연동 22통 2반과 70통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덕연동 71통부터 79통까지를 각각 72통부터 80통까지로 하며, 덕연동 71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덕연동	22	2	89-1~89-4, 89-3~89-10, 90-2~90-4, 33-47, 59, 67, 32, 49~58, 62, 01~98(89-51 제외), 242, 308, 804-1
⋮	⋮	⋮	⋮
	70	1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1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105~1505, 106~1506호
		2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2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3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3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105~1505, 106~1506호
	71	1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4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2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5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105~1505, 106~1506호
		3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6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상가,
		4	연향동 89-51 신성뜨란채 1동 ~ 7동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72	1 2 3 4 5 6	연향동 1658 블루시안아파트 상가 101동 101~1401호, 102~1402호 101동 103~1403호, 104~1404호 102동 101~1401호, 102~1402호 102동 103~1403호, 104~1404호 103동 101~1401호, 102~1402호 104동 101~1401호, 102~1402호 104동 103~1403호, 104~1404호 105동 101~1501호, 102~1502호 105동 103~1503호, 104~1504호 106동 101~1501호, 101~1502호 106동 103~1503호, 104~1504호 106동 105~1505호, 106~1506호
	73	1 2 3 4 5 6	연향동 1659 대주피오레 아파트 상가 101동 101~1201호, 102~1202호 101동 103~1203호, 104~1402호 102동 101~1201호, 102~1202호 103동 101~1501호, 102~1502호 104동 101~1501호, 102~1502호 104동 103~1503호, 205~1505호 105동 201~1501호, 102~1502호 105동 103~1503호, 105~1505호 106동 101~1501호, 202~1502호 107동 201~1501호, 102~1502호 108동 101~1501호, 202~1502호 108동 203~1503호, 105~1505호
	74	1 2 3 4 5 6 7 8	연향동 1660-1 연향주공아파트 상가 101동 201~1501호, 202~1502호 101동 203~1503호 101동 204~1504호, 205~1505호 101동 206~1506호 102동 101~1501호, 102~1502호 102동 103~1503호, 104~1504호 102동 205~1505호, 106~1506호 102동 107~1507호, 108~1508호 103동 101~1501호, 102~1502호 103동 103~1503호 103동 104~1504호, 105~1505호 103동 106~1506호 104동 101~1501, 102~1502호 104동 103~1503호 104동 104~1504, 105~1505호, 104동 106~1506호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75	1	연향동 1660-2 세영더조은 아파트 상가 101동 101~1501호, 102~1502호 102동 101~1401호, 102~1402호
		2	103동 101~1401호, 102~1402호 103동 103~1203호, 104~1204호
		3	104동 101~1501호, 102~1502호 104동 103~1503호, 104~1504호
		4	105동 201~1501호, 102~1502호 105동 103~1503호, 104~1504호
		5	106동 101~1301호, 102~1302호 106동 103~1303호, 104~1304호
		6	107동 101~1001호, 102~1002호 107동 103~1003호, 104~1004호 107동 105~1205
	76	1	연향동 1661, 1662-1~8, 1663-1~8, 1664-1~4 1673-1~4, 1674-1~15, 1675-1~8,
		2	연향동 1665-1~6, 1666-1~7, 1667-1~10 1668-1~10, 1669-1~10, 1670-1~7, 1671-1~3, 1672-1~11
		3	연향동 1679-1~8, 1680-1~11, 1681-1~6, 1682 1683-1~4, 1684-1~6, 1685-1~8 1686-1~5, 1687-1~5
		4	연향동 1676-1~16, 1677-1~9, 1678-1~5 1688-1~3, 1689-1~6, 1690-1~4 1691-1~6, 1692-1~7
	77	1	연향동 1746 송보파인빌 아파트 101동 1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104~2004호
		2	102동 101~20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1604호
		3	103동 101~18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1904호
		4	104동 101~20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1604호
		5	105동 101~1901호, 102~1902호 203~1903호, 104~1804호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78	1	연향동 1746 송보파인빌 아파트 106동 101~16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2004호 105~1605호
		2	107동 101~1301호, 202~1302호 103~1903호, 104~1904호
		3	108동 201~1801호, 202~1802호 203~1903호, 204~1904호
		4	109동 101~1701호, 102~1702호 103~1603호, 104~1904호 305~1905호
		5	110동 301~1901호, 202~1902호 103~1603호, 104~1604호 상가동
	79	1	연향동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2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80	1	연향동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2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별표 2 중 왕조1동 37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72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왕조1동	37	1	조례동 1730-1 서해골드빌 101동 101~1504호
		2	서해골드빌 102동 101~1504호
		3	서해골드빌 103동 101~1504호
		4	서해골드빌 104동 101~1504호
⋮	⋮	⋮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72	1	조례동 598, 698-1~698-3, 608, 810, 816, 817, 833, 834, 836-1~9, 840-1~3, 710, 720, 722, 723, 767, 787-1~787-14, 790-1~790-17, 791, 791-1, 191-2, 792-1, 793, 794, 795, 796-1,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7-1~807-5, 808, 809, 810, 811, 812-1~812-2, 813, 814-1
		2	조례동 산94, 산95~95-1, 산96-1, 산98-3~98-8, 758~758-46, 759-1, 760~760-2, 770-1~770-34, 771-1~771-2, 772, 772-7, 1730-1~1730-13, 1731~1731-13, 1732~1732-10, 1734~1734-10, 1735-6~1735-13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4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4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1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4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5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5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105~1505, 106~1506호			2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5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105~1505, 106~1506호
		6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6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상가			3	연향동 89-28 코아루아파트 106동 101~1501, 102~1502호 103~1503, 104~1504호, 상가,
						4	연향동 89-51 신성뜨란채 1동 ~ 7동
	71	1	연향동 1658 블루시안아파트 상가 101동 101~1401호, 102~1402호 101동 103~1403호, 104~1404호		71	1	연향동 1658 블루시안아파트 상가 101동 101~1401호, 102~1402호 101동 103~1403호, 104~1404호
		2	102동 101~1401호, 102~1402호 102동 103~1403호, 104~1404호			2	102동 101~1401호, 102~1402호 102동 103~1403호, 104~1404호
		3	103동 101~1401호, 102~1402호 104동 101~1401호, 102~1402호			3	103동 101~1401호, 102~1402호 104동 101~1401호, 102~1402호
		4	104동 103~1403호, 104~1404호 105동 101~1501호, 102~1502호			4	104동 103~1403호, 104~1404호 105동 101~1501호, 102~1502호
		5	105동 103~1503호, 104~1504호 106동 101~1501호, 101~1502호			5	105동 103~1503호, 104~1504호 106동 101~1501호, 101~1502호
		6	106동 103~1503호, 104~1504호 106동 105~1505호, 106~1506호			6	106동 103~1503호, 104~1504호 106동 105~1505호, 106~1506호
	72	1	연향동 1659 대주피오레 아파트 상가 101동 101~1201호, 102~1202호 101동 103~1203호, 104~1402호			1	연향동 1659 대주피오레 아파트 상가 101동 101~1201호, 102~1202호 101동 103~1203호, 104~1402호
		2	102동 101~1201호, 102~1202호 103동 101~1501호, 102~1502호			2	102동 101~1201호, 102~1202호 103동 101~1501호, 102~1502호
		3	104동 101~1501호, 102~1502호 104동 103~1503호, 205~1505호			3	104동 101~1501호, 102~1502호 104동 103~1503호, 205~1505호
		4	105동 201~1501호, 102~1502호 105동 103~1503호, 105~1505호			4	105동 201~1501호, 102~1502호 105동 103~1503호, 105~1505호
		5	106동 101~1501호, 202~1502호 107동 201~1501호, 102~1502호			5	106동 101~1501호, 202~1502호 107동 201~1501호, 102~1502호
		6	108동 101~1501호, 202~1502호 108동 203~1503호, 105~1505호			6	108동 101~1501호, 202~1502호 108동 203~1503호, 105~1505호
	73	1	연향동 1660-1 연향주공아파트 상가 101동 201~1501호, 202~1502호 101동 203~1503호			1	연향동 1660-1 연향주공아파트 상가 101동 201~1501호, 202~1502호 101동 203~1503호
		2	101동 204~1504호, 205~1505호 101동 206~1506호			2	101동 204~1504호, 205~1505호 101동 206~1506호
		3	102동 101~1501호, 102~1502호 102동 103~1503호, 104~1504호			3	102동 101~1501호, 102~1502호 102동 103~1503호, 104~1504호
		4	102동 205~1505호, 106~1506호 102동 107~1507호, 108~1508호			4	102동 205~1505호, 106~1506호 102동 107~1507호, 108~1508호
		5	103동 101~1501호, 102~1502호 103동 103~1503호			5	103동 101~1501호, 102~1502호 103동 103~1503호
		6	103동 104~1504호, 105~1505호 103동 106~1506호			6	103동 104~1504호, 105~1505호 103동 106~1506호
		7	104동 101~1501, 102~1502호 104동 103~1503호			7	104동 101~1501, 102~1502호 104동 103~1503호
		8	104동 104~1504, 105~1505호, 104동 106~1506호			8	104동 104~1504, 105~1505호, 104동 106~1506호

현행				개정안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74	연향동 1660-2 세영더조은 아파트 상가 101동 101~1501호, 102~1502호 102동 101~1401호, 102~1402호 103동 101~1401호, 102~1402호 103동 103~1203호, 104~1204호 104동 101~1501호, 102~1502호 104동 103~1503호, 104~1504호 105동 201~1501호, 102~1502호 105동 103~1503호, 104~1504호 106동 101~1301호, 102~1302호 106동 103~1303호, 104~1304호 107동 101~1001호, 102~1002호 107동 103~1003호, 104~1004호 107동 105~1205			75	연향동 1660-2 세영더조은 아파트 상가 101동 101~1501호, 102~1502호 102동 101~1401호, 102~1402호 103동 101~1401호, 102~1402호 103동 103~1203호, 104~1204호 104동 101~1501호, 102~1502호 104동 103~1503호, 104~1504호 105동 201~1501호, 102~1502호 105동 103~1503호, 104~1504호 106동 101~1301호, 102~1302호 106동 103~1303호, 104~1304호 107동 101~1001호, 102~1002호 107동 103~1003호, 104~1004호 107동 105~1205
		75	연향동 1661, 1662-1~8, 1663-1~8, 1664-1~4 1673-1~4, 1674-1~15, 1675-1~8, 연향동 1665-1~6, 1666-1~7, 1667-1~10 1668-1~10, 1669-1~10, 1670-1~7, 1671-1~3, 1672-1~11 연향동 1679-1~8, 1680-1~11, 1681-1~6, 1682 1683-1~4, 1684-1~6, 1685-1~8 1686-1~5, 1687-1~5 연향동 1676-1~16, 1677-1~9, 1678-1~5 1688-1~3, 1689-1~6, 1690-1~4 1691-1~6, 1692-1~7			76	연향동 1661, 1662-1~8, 1663-1~8, 1664-1~4 1673-1~4, 1674-1~15, 1675-1~8, 연향동 1665-1~6, 1666-1~7, 1667-1~10 1668-1~10, 1669-1~10, 1670-1~7, 1671-1~3, 1672-1~11 연향동 1679-1~8, 1680-1~11, 1681-1~6, 1682 1683-1~4, 1684-1~6, 1685-1~8 1686-1~5, 1687-1~5 연향동 1676-1~16, 1677-1~9, 1678-1~5 1688-1~3, 1689-1~6, 1690-1~4 1691-1~6, 1692-1~7
		76	연향동 1746 송보파인빌 아파트 101동 1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104~2004호 102동 101~20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1604호 103동 101~18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1904호 104동 101~20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1604호 105동 101~1901호, 102~1902호 203~1903호, 104~1804호			77	연향동 1746 송보파인빌 아파트 101동 1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104~2004호 102동 101~20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1604호 103동 101~18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1904호 104동 101~20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1604호 105동 101~1901호, 102~1902호 203~1903호, 104~1804호
		77	연향동 1746 송보파인빌 아파트 106동 101~16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2004호 105~1605호 107동 101~1301호, 202~1302호 103~1903호, 104~1904호 108동 201~1801호, 202~1802호 203~1903호, 204~1904호 109동 101~1701호, 102~1702호 103~1603호, 104~1904호 305~1905호 110동 301~1901호, 202~1902호 103~1603호, 104~1604호 상가동			78	연향동 1746 송보파인빌 아파트 106동 101~1601호, 102~2002호 203~2003호, 104~2004호 105~1605호 107동 101~1301호, 202~1302호 103~1903호, 104~1904호 108동 201~1801호, 202~1802호 203~1903호, 204~1904호 109동 101~1701호, 102~1702호 103~1603호, 104~1904호 305~1905호 110동 301~1901호, 202~1902호 103~1603호, 104~1604호 상가동
		78	연향동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79	연향동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79	연향동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80	연향동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				⋮	

## 현 행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왕조1동	37	1	조례동 598, 698-1~698-3, 608, 810, 816, 817, 833, 834, 836-1~9, 840-1~3, 710, 720, 722, 723, 767, 787-1~787-14, 790-1~790-17, 791, 791-1, 191-2, 792-1, 793, 794, 795, 796-1,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7-1~807-5, 808, 809, 810, 811, 812-1~812-2, 813, 814-1
		2	조례동 1730-1 서해골드빌 101동 101~1504호
		3	서해골드빌 102동 101~1504호
		4	서해골드빌 103동 101~1504호
		5	서해골드빌 104동 101~1504호
⋮	⋮	⋮	⋮

⋮

## 개 정 안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왕조1동	37	1	조례동 1730-1 서해골드빌 101동 101~1504호
		2	서해골드빌 102동 101~1504호
		3	서해골드빌 103동 101~1504호
		4	서해골드빌 104동 101~1504호
⋮	⋮	⋮	⋮
⋮	72	1	조례동 598, 698-1~698-3, 608, 810, 816, 817, 833, 834, 836-1~9, 840-1~3, 710, 720, 722, 723, 767, 787-1~787-14, 790-1~790-17, 791, 791-1, 191-2, 792-1, 793, 794, 795, 796-1,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7-1~807-5, 808, 809, 810, 811, 812-1~812-2, 813, 814-1
		2	조례동 산94, 산95~95-1, 산96-1, 산98-3~98-8, 758~758-46, 759-1, 760~760-2, 770-1~770-34, 771-1~771-2, 772, 772-7, 1730-1~1730-13, 1731~1731-13, 1732~1732-10, 1734~1734-10, 1735-6~1735-13
⋮	⋮	⋮	⋮

⋮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
  - 이·통·반장 임명(2개 통, 2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이통장	848	850	2	
반 장	2,327	2,329	2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47,300	-9,460	-9,460	-9,460	-9,460	-9,460
세입(a)						
세출(b)	47,300	9,460	9,460	9,460	9,460	9,46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47,300	9,460	9,460	9,460	9,460	9,460
국 비						
도 비						
시 비	47,300	9,460	9,460	9,460	9,460	9,46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 소요예산 : 9,460천원/년 (이·통장 2명/반장 2명)
- 산출기초
  - 이·통장 기본수당 : 300,000원×12월×2명=7,200,000원
  - 이·통장 상여금 : 300,000원×2회(설, 추석)×2명=1,200,000원
  - 이·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원×2회(월)×12월×2명=960,000원
  - 반장 수당 : 25,000원×2회(설, 추석)×2명=100,000원

##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 8.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과장 조태훈(☎749-5453)
- 자치행정팀장 양영만(☎749-5625)

#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2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 31.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표1] 지방공무원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정비(공무원 여비 규정 반영)
  - 정액지급(특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 상한선 범위 내 실비지급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2019. 12. 31. ~ 2020. 1. 22.)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2. 26.(여성가족과-267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 20.(기획예산실-9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 22.(순천시 공고 제2019-2344호)

#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 5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 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u>특·광역시 60,000</u> <u>그 밖의 지역 50,000</u>	제2호	실비 (일반 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u>실비</u> <u>(상한액:</u> <u>서울특별시 70,000,</u> <u>광역시 60,000,</u> <u>그 밖의 지역</u> <u>50,000)</u>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2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자 : 2020. 1. 31.

##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련 정보공개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13조(비용부담) 제1항 [별표]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2. 2. ~ 12. 23.)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1. 28.(여성가족과-2431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29.(기획예산실-157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2. 2.(순천시 공고 제2019-2165호)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1,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li> <li>○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li> </ul>
------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참고 : 현행 조례(별표) 】

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 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 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12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 31.

## 1. 제안이유

-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규정 마련
-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3조)
- 다함께 돌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 설치·운영,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안 제8조)
  -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구성(안 제9~10조)
  -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

## 3. 제 정 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44조 2(다함께돌봄센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불입(비용추계서)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2. 02. ~ 12.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2. 10.(여성가족과-25344)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11. 12.(아동청소년과-39812)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20.(기획예산실-1537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2. 2.(순천시 공고 제2019-2174호)

#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

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 따른 3자녀이상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우선 근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역할을 연계 및 조정하기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계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돌봄 시설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한 경우

**제13조(회의)** ① 협의체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시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관계자 교육 등)** 시장은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전학을 위해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는 순천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돌봄 아동 교육 및 보호와 관련된 사업으로 비용발생이 예상된다.

#### 나. 관련조문

- 안 제4조 (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역할을 연계 및 조정하기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지원한다.

1. 지역 돌봄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2. 비용추계의 전제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와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발생

- 다함께돌봄센터 : 2022년까지 5개소 확충계획으로 비용추계

\* 신규설치 : ('20) 1개소 → ('21) 2개소 → ('22) 2개소

### 3. 비용추계의 결과

○ 5년간(2020~2024) 1,428백만원(국비 755, 도비 210, 시비 463)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비용 (a-b)	-463,464	-37,656	-91,968	-131,280	-101,280	-101,280
세입(a)	964,561	90,701	217,906	290,914	182,520	182,520
세출(b)	1,428,025	128,357	309,874	422,194	283,800	283,8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428,025	128,357	309,874	422,194	283,800	283,800
국 비	754,505	72,277	172,634	228,794	140,400	140,400
도 비	210,056	18,424	45,272	62,120	42,120	42,120
시 비	463,464	37,656	91,968	131,280	101,280	101,28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국도비 보조금 및 시 자체 지원기준 (2020년)

(단위 : 천원)

구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돌봄지원	
					회의수당	사업비
지원금액 (개소당)	50,000	19,197	52,560	3,600	1,000	2,000
국 비	50%	100%	50%	50%		
도 비	20%		15%	15%		
시 비	30%		35%	35%	100%	100%



#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12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 31.

## 1. 제안이유

- 「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제정
- 현재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 전문가 참여를 위하여 15인 이내로 위원 확대
-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자조모임 운영 물품,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등 지원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시민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관련법령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불임(비용추계서)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31. ~ 11. 20.)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24.(여성가족과-2148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10. 1.(건강증진과-1638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0. 14.(기획예산실-1299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31.(순천시보건소 공고 제2019-9호)

#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말한다.
2.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3.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 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성별에 따른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영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원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밖에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
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노인·장애인 업무 담당과장,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계자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②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외 부분 중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로 한다.

#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원
-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
-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 그 밖에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용(a-b)	-260,840	-48,168	-50,168	-52,168	-54,168	-56,168
세입(a)	391,260	72,252	75,252	78,252	81,252	84,252
세출(b)	652,100	120,420	125,420	130,420	135,420	140,42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652,100	120,420	125,420	130,420	135,420	140,420
국 비	326,050	60,210	62,710	65,210	67,710	70,210
도 비	65,210	12,042	12,542	13,042	13,542	14,042
시 비	260,840	48,168	50,168	52,168	54,168	56,168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0년

○ 사업내용

• 2020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광장애어로빅, 만성질환자 건강교실, 직장인 달밤운동교실

곰두리요가프로그램, 산전·산후 요가프로그램, 갱년기 건강관리교실 등

• 시민 건강걷기 분위기 확산을 위한 「더 걷자! 순천」사업 전개

- 걷기 어플 운영(빅워크), 걷기 미션달성자 및 걷기리더 인센티브 지급

• 건강증진 주민 자조모임 운영

○ 사업비(2020년) : 120,420천원

○ 산출근거(2020년)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120,420
일 반 보상금	기 타 보상금	소 계	1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지도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강사비) (동지역) 30,000원 x 15명 x 7월 x 12회 = 37,800천원</li> <li>(읍·면, 야외지역) 40,000원 x 17명 x 7월 x 12회 = 57,120천원</li> </ul>	94,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걷자! 순천」 걷기 미션달성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순천사랑상품권 등 구입비</li> <li>- 10,000원 x 650명 = 6,500천원</li> </ul>	6,500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소 계	1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걷자! 순천」앱 운영비</li> <li>- 1,000,000원 x 9월 = 9000천원</li> </ul>	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li> <li>- 5,000원 x 1,000명 x 2종 = 10,000,000원</li> </ul>	1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

심기섭(☎ 749-6874)

건강관리팀장

송전용(☎ 749-6875)

#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135호
----------	--------

발의연월일 : 2020. 1. 31.

발의자 : 김미연, 남정옥, 최병배,  
이영란 의원

###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하여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에 비치·제공하는 편의용품에 여성위생용품 신설(안 제8조 제1항 제5호)
  -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단서 조문 추가(안 제8조 제1항)
  -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8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34조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에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을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에 곤란하거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2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 31.

## 1.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확대를 통해 실행력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유도하여 생태와 정원의 도시 조성

## 2. 주요내용

- 당초 보조금 지원대상을 단독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연면적 660㎡이하)로 제한하였으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녹화분야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제한 배제(제4조)
- 건물 녹화시 구조안전 검토와 시설보강, 관리의 부담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액과 보조율을 최대 4천만원, 80%까지 지원 확대하여 실행력 제고(제5조 제2항)
-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사업대상 건축물의 지원내용을 기재하고, 의무기간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방지(제8조)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2. 16. ~ 2020. 1.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2. 09.(기획예산실-1636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2. 16.(순천시 공고 제2019-2258호)
-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19. 12. 17.(여성가족과-2595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없음
- 녹색건축 조성 심의위원회 자문 : 2019. 11. 26.(건축과-43426)

#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주상복합건축물(연면적 660㎡이하)”를 “주상복합건축물(연면적 660㎡이하로 하되, 제5호 옥상녹화 조성에 대한 건축용도 및 규모는 제한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련법에 의한 의무적인 조경은 제외한다)”를 “(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최대 2천만원까지”를 “최대 3천만원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녹화 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30㎡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를 “녹화면적 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5분의 4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를 “공사비용의 5분의 4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옥상녹화·벽면녹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 관리한다.”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에 기록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조금 지원으로 조성된 시설은 최소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소홀한 경우 보조금을 반납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양도에 의한 포괄승계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적용대상) ①</b>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u>주상복합건축물(연면적 660㎡이하)</u>로 다음 각 호 행위를 말한다.</p> <p>1. ~ 4. (생략) 5. <u>옥상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련법에 의한 의무적인 조경은 제외한다) 조성</u></p> <p><b>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①</b>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p> <p>1.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u>최대 2천만원까지</u></p> <p>2. (생략) 3. <u>옥상녹화·벽면녹화사업은 녹화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u></p> <p>4. 제1호 내지 제3호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u>최대 3천만원까지</u></p> <p><b>제8조(사후관리) ①</b> (생략)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u>옥상녹화·벽면녹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 관리한다.</u> &lt;신설&gt;</p>	<p><b>제4조(적용대상) ①</b> ----- ----- ----- <u>주상복합건축물(연면적 660㎡이하로 하되, 제5호 옥상녹화 조성에 대한 건축용도 및 규모는 제한하지 않는다)</u>----- -----.</p> <p>1. ~ 4. (현행과 같음) 5. -----(<u>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는다</u>) ----</p> <p><b>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①</b> (현행과 같음) ② ----- -----.</p> <p>1. ----- ----- <u>최대 3천만원까지</u></p> <p>2. (현행과 같음) 3. ----- <u>녹화면적 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5분의 4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u></p> <p>4. ----- <u>공사비용의 5분의 4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u></p> <p><b>제8조(사후관리) ①</b> (현행과 같음) ② ----- <u>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에 기록 관리한다.</u> ③ <u>보조금 지원으로 조성된 시설은 최소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소홀한 경우 보조금을 반납조치할 수 있다. 다만 양도에 의한 포괄승계는 예외로 한다.</u></p>

#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 요인(관련 조문)

### ○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2.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수선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3. 옥상녹화·벽면녹화사업은 녹화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5분의 4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4. 제1호 내지 제3호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5분의 4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6차년도 (2025년)	7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2,6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세입(a)	0	0	0	0	0	0	0	0
세출(b)	2,6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6차년도 (2025년)	7차년도 (2026년)
합계	2,6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국비								
도비								
시비	2,6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년 평균 지원물량을 추계하여 산정)

○ 2020년도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비 산출 내역(총300백만원)

- 패시브하우스 건축 : 개소당 30백만원 × 5개소 = 150백만원
- 옥상 및 벽면녹화 : 개소당 40백만원 × 3개소 = 120백만원
- 신·재생 에너지 : 개소당(3kW) 1.7천원 × 18개소 = 30백만원

※ 년도별 지원실적(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금액	1,500	100	300	300	300	500	300	보조율50%
건수	계	220	25	81	62	32	공모중(20)	-
	패시브	38(7건/년)	3	7	6	10	공모중(12)	3천만원 이하 (개정안)
	건물녹화	0	0	0	0	0	공모중( 0)	4천만원 이하 (개정안)
	신재생	182(30건/년)	22	74	56	22	공모중( 8)	kW당 56만원 (19년기준)

####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 8. 작성자(참여자)

안전도시국 건축과 건축과장 신영수 (☎ 749-6202)  
 건축물관리팀장 박성희 (☎ 749-6385)

#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12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 31.

## 1. 제안이유

- 유네스코로부터 순천시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6조)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등(안 제7조 ~ 안 제9조)
  - 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
  - (시행계획) 관련 실·과·소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안 제10조 ~ 안 제17조)
  - (목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심의
  - (구성) 위원장 1명(부시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당연직) 관광, 농축산업, 해양수산, 산림, 공원녹지, 환경 업무담당 국소장
    - (전문가) 환경, 산림, 해양, 관광, 생태 분야
    - 시의회 의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등
- 실무 추진단 구성과 역할(안 제18조 ~ 안 제19조)
  - (목적) 생물권보전지역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
  - (구성)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생물권보전지역 관련부서)
- 국내·외 협력강화(안 제20조)
  - 생물권보전지역 간 교류 및 협력강화를 통한 기능향상
  - (수행내용)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성과와 관리경험 공유, 자문과 홍보, 인력 및 정보교류, 공동연구사업 등

○ 브랜드 활용(안 제21조 ~ 안 제22조)

-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 높일 수 있는 브랜드 개발
- 브랜드 활용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질 향상, 자원 특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 주민참여 및 지원(안 제23조 ~ 안 제25조)

-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 도모 위한 주민 참여
- 지역산출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시 또는 추진단에 제출
- 주민 스스로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 보칙(안 제26조 ~ 안 제29조)

- 교육프로그램 운영,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등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1. 15. ~ 2019. 12.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1. 14.(여성가족과-2311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11. 1.(생태환경과-1989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14.(기획예산실-1505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1. 15.(순천시 생태환경센터 공고 제2019-3호)

#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각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가 조합된 지역으로 순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유전자원, 종(種),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기능
  - 나. 사회·문화·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
  - 다.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교육·훈련·연구·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
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 “순천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순천시가 청정지역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이 특허청에 등록된 고유 상표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의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다만, 유네스코 MAB 등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전문 관리기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적극 협조토록 권장하고 주민 교육,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조례 등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등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 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훈련·모니터링·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복지·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실·과·소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실·과·소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브랜드의 총체적 운영관리와 디자인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광, 농축산업, 해양수산, 산림, 공원녹지, 환경 업무담당 국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순천시회의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산림·해양·관광·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전문 분야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타 회의 운영 기준은 제15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회의 규정에 따른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실무추진단 구성과 역할

제18조(구성)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단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반원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역할) 생물권보전지역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2.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3.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부착(활용)기준안 마련
4. 자연생태관광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5. 연안지역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
6. 농수축산물 특화품목 개발 지원 및 판매전략 수립
7. 친환경 재배기술 지도 및 소득작물 보급
8.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제5장 국내·외 협력강화

제20조(네트워크) ① 시장은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간 교류 및 협력강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 국내·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2.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구·훈련·환경교육·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와 관리경험의 공유
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자문과 홍보, 인력 및 정보교류
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 연구사업 등의 추진
5.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국내·외 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

## 제6장 브랜드의 활용

제21조(브랜드의 개발)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Logo)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2조(브랜드의 활용) ① 시장은 대표 브랜드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 과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로고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브랜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브랜드 사용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장 주민참여 및 지원

제23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또는 추진단에 제출한 사항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등의 장려)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 토론, 지역포럼, 마을회의, 협의회 회의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도출한다.

제25조(주민지원)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사업 :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비,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주민 자체교육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
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비,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사업비 등

## 제8장 보 칙

제26조(지원사업의 철회 등) ① 시장은 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규정에 따른 금지·제한 사항을 위배하거나 추진단, 순천시, 유네스코 MAB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계획에 따른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제25조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이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그 보조목적에 위반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하

고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지원사업의 전부를 철회 또는 취소할 경우 주민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 유관기관·단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제25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5조(주민지원)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사업 :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비,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주민 자체교육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
  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비,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사업비 등

## 2. 비용추계의 전제

-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주민참여 사업, 지속가능한 사업 지원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세입(a)	-	-	-	-	-	-
세출(b)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